

『2014년 창업인턴제 (Venture For Korea)』 참가자 모집 공고

창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벤처·창업기업 현장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『2014년 창업인턴제』 참가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17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1

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창업 전 벤처·창업기업의 인턴근무기회 제공으로 현장경험을 통해 경영·마케팅 등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 및 생존율을 제고

□ 사업 내용

- (지원대상) 대학(원) 재학(학부 4학기 이상 수료) 및 미취업졸업생(졸업 후 1년 이내)으로 ① 창업의지가 있고, ② 구체적 창업계획이 있는 자

- (참여자격)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예비창업자*

*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장을 폐업 했을 경우 신청가능

- (선발규모) 70명 내외

- (지원내용) 인턴과정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(최대 80만원)하고, 실제창업으로 연결 시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(최대 1억원)을 조건부지원

- (인턴기간) 선발된 인턴은 1년 근무가 기본이며, 고용기업(인턴 연수 시행기업)과 인턴의 합의 하에 추가 1년 연장 가능

기본요건

- (신청자격) 대학(원) 재학생 및 미취업졸업생

구 분		자격 요건
대학생	2·3년제	▪ 학부 3학기 이상 수료자 ('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)
	4년제	▪ 학부 4학기 이상 수료자 ('14년 6월에 수료 완료한 자까지 포함)
대학원생		▪ 대학원(일반·전문·특수) 재학생
졸업생		▪ 대학(원) 졸업 후 1년 이내인 미취업 졸업생 ('13년 2월 졸업생까지 포함)

*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원격대학(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) 포함

** 공고일 기준, 대학생 자격 요건 충족 후 중퇴 한지 1년 이내의 자는 신청가능

- (필수요건) 최소 1년 이상 창업기업 인턴근무가 가능한 자

* 휴학요건 및 제한은 각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전 필히 확인 후 신청

제한요건

-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을 통해 지원받은 자,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중단·중도포기자 포함)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별첨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

-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로 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

< 협약 완료 후 신청했을 경우 창업지원금 지원조건 >

지원금액	인턴근무 후 창업 시 지원조건
1천만원 이내	▪ 평가결과 확정된 창업지원금을 전액지원
1천만원 초과	▪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확정된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

- 중소기업청 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원사업의 협약 해약,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인턴 근무 후 창업 시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- * 불임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,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참여 가능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 - * 단,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
-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3

신청서 제출

□ 신청·접수기간 : 2014. 7. 17(목) ~ 2014. 7. 31(목), 16:00

*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사업관리시스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, 가급적 마감일 이전 접수 요망

□ 제출방법 : 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 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
온라인 접수(마감일까지 업로드 완료분에 한함)

< 주요 신청절차 >

◆ 창업넷 접속 ▶ 개인회원가입 ▶ 로그인 ▶ 창업교육 ▶ 창업인턴제

▼
제출서류 업로드 ◀ 기본정보·참여신청서 입력 ◀ 사업신청 ◀ 인턴연수기업확인

- **(제출절차)**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준비(12일간) → 인턴연수기업 사전 선택 및 제출(4일간) 등과 같이 2단계로 준비·제출

1단계	제출서류 준비	▪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	'14.7.17 ~ 27.
2단계	기업선택 및 신청	▪ 인턴연수기업 공개·선택(2순위) 및 사업신청	'14.7.28 ~ 31.

□ **제출서류 :** 사업계획서 및 증빙관련 서류 일체

< 제출서류 안내 >

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학 / 졸업(예정) 증명서 ▪ 사업계획서 				
해당자 제출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▪ 자격증 사본</td> <td style="width: 50%; padding: 5px;">▪ 경력 증명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▪ 평가사항 증빙서류*</td> </tr> </table>	▪ 자격증 사본	▪ 경력 증명서	▪ 평가사항 증빙서류*	
▪ 자격증 사본	▪ 경력 증명서				
▪ 평가사항 증빙서류*					

* 평가사항 증빙서류 : 불임 1.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 세부내역 참조

4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및 선정방법 :** 요건검토→서면평가→발표평가 등 총 3단계로 각 단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의지 및 역량을 평가

- **(요건검토)** 신청자 기본요건 및 제한사항 준수여부 등을 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서면평가 대상자로 추천
- **(서면평가)** 인턴지원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자의 역량, 인턴근무 및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정인원의 2배수 추천
- **(대면평가)** 발표평가를 통해 추진의지 및 지원필요성, 추진역량 등을 평가하고, 인턴연수시행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선정*

* 사전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업-인턴간 매칭에 성공했을 경우 최종 선정

□ 평가 절차



5

추진일정

구 분	내 용	일 정
◆ 사업공고	사업공고 및 신청접수	'14. 7. 17 ~ '14. 7. 31
◆ 서면평가	신청자 서면평가 진행	8월 1째주
◆ 대면평가	대면평가 진행	8월 2째주
◆ 선정자 공고	선정자 공고 및 사전교육 안내	8월 2~3째주
◆ 사전교육	선발인턴 사전교육 및 매칭	9월 1째주 ~ 9월 2째주
◆ 계약체결	인턴-기업 간 계약	9월 3~4째주
◆ 인턴근무	선발인턴 근무 시작	10월 ~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

기타사항

□ 유의사항

- 지정신청서는 창업넷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
- 同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공고 명시사항을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사업신청서 제출 후 펼히 접수확인 (창업넷 “마이페이지”에서 확인)
- 최종선정 후 선정자는 7일간 사전교육(9월 초~중순 예정)에 참석될 수

□ 접수 및 사업안내

- 창업진흥원 창업교육팀 : ☎ 042 - 480 - 4466
- 중소기업 종합상담 : 국번없이 1357 누르신 후 3번
- 신청·접수 및 종합안내 시스템 : "창업넷" (www.changupnet.go.kr)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www.smba.go.kr

붙임 1. 창업관련 활동내역 인정사항

『 창업인턴제 (Venture For Korea) 』

창업관련 활동 인정항목

평가 시 반영 항목				
구분	순번	평가 사항	확인	가점
인정항목	①	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자	동아리활동 지원기관의 확인증 등 ¹⁾	2점
	②	창업강좌 수강이력 (정부·지자체 개설)	해당 인증·확인·증명서류 ²⁾	2점
	③	창업에듀 수강 (20시간 이상)	강좌 수료증	1점
	④	창업경진대회 참가 (정부 지자체, 교내, 민간 개최 포함)	(참가) 참가접수증, 참가서류 등 (입상) 상장 사본 ³⁾	1점
	⑤	앱 창작터 수료기업(중소기업청 지정)	전문 및 심화과정 수료증 중 1개	2점
	⑥	(신청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의)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출원·등록	해당 인증·확인·증명서류	3점
가점항목	①	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	주민등록증 사본	1점
	②	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자	장애인 증명서	

※ 실제 인정사항에 해당하는 활동 및 성과를 수행했다 하더라도, 모든 가점사항은
서류로 증빙가능해야 하고, 서류상 근거가 미비할 시 불인정 될 수 있음

1)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자생적으로 결성된 창업동아리 일 경우에도, 그간 활동을 증빙할 만한 공신력 있는 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점으로 인정

2) 단순 경영·마케팅·회계 등 경영학 일반에 관련된 강좌는 제외하며, 최소 20시간 이상 인정

3) 팀 참가로 입상하여 상장에 팀이름이 기재된 경우, 상장사본 및 팀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붙임 2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

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	
수예년도	2011년 ~ 2014년
지원제외 대상사업	· 실험실창업 지원사업
	·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
	·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
	· 연구원특화 예비 창업자 육성사업
	· (제조기반)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
	· 아이디어사업화 지원사업(제조, 지식)
	·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
	·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
	·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
	· 앱창업 전문기관운영사업 (앱 개발자금, 앱 사업화자금)
	· 창업선도대학(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)

지원제외 대상 업종		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12
6	기타 캠핑 및 배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 용 세탁업은 제외)	96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